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521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김재섭·엄태영·조지연

조승환·신성범·김용태

박덕흠·박정훈·최수진

조은희·박정하·배현진

김위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제44조의  
3에 따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br>-----<br>-----<br>-----<br>-----<br>-----<br>-----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 ④ (생략)<br><u>&lt;신설&gt;</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u>&lt;신설&gt;</u>                                                                                                    |                                                                                                                     |